



[지식재산권 눈뜨 태국] 특허, 브랜드 관리 비상



태국 국민들이 몹시 화가 났다. 농민들은 미 대사관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인다. 각종 농민단체는 언론에 출연, 미국을 비난하고나서는 등 울분에 찬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태국 전역이 술렁이는 이유는 뭘까. 태국은 매년 미국으로 30만 이상의 자스민향 쌀을 수출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쌀 품종 개발자들이 태국 특산 자스민향 쌀의 변종을 개발해 현지에 유통시켰다. 미국에서 태국산과 똑같은 품질의 쌀을 개발한다면 수출물량이 끊길 수밖에 없다. 태국 농민들 시위도 이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태국은 미국의 품종개발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특허권은 등록된 영토에서만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자스민향 쌀 유통을 막으려면 현지에서 특허를 냈어야 했다. 타크신 시나와트라 수상은 뒤늦게 미국변호사를 고용, 미국 내 변종쌀 유통을 막아보려 애쓰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태국에서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경제주간지 파이스트인 이코노미리뷰는 최신회(1월 31일자)에서 '아시아의 법률가와 과학자들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부를 빼앗길 것'이라 경고했다.

* 지식재산권 전문가 절실

태국에서 진행되는 지식재산권 보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광범위한 특허등록이다. 미국과 "쌀 분쟁"이 생긴 이유도 특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타니트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인물이다. 그는 태국 바이오·유전공학 국립연구소(바이오텍)에서 개발한 신기술 보호임무를 맡고있다. 바이오텍에서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 곰팡이" 기술 보호도 그의 노력 결과다.

타니트 변호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특허권은 등록된 영토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수출국가에서의 특허등록은 아주 핵심적인(critical) 요소"라고 강조했다. 태국 정부는 자스민향 쌀로 호되게 당한 일을 교훈 삼아 특허등록을 더욱 강화할 태세다.

브랜드와 트레이드마크 관리도 필수다. 법률회사 텔레케앤드기빈스의 지적재산 컨설턴트 에드워드 켈리는 "특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만료되지만 브랜드는 무한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태국산 자스민향 쌀을 고품격 브랜드로 성장시킨다면 단순히 플로리다에서 자란 자스민향 쌀보다는 소비자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가지 않겠느냐"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태국은 외국기업의 기술도용을 막기 위해 접근을 억제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켈리는 "자국 과학자들이 외국기업의 기술 접근에 좀더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기술도용이 훨씬 쉽다"며 "외국인에게 비밀유지협약을 맺게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 움직임은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

도네시아가 참석한 가운데하노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지식재산권과 기술 네트워크 회의에서 유전공학 기술 보호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 회의에 태국 대표로 나선 타니트 변호사는 “아시

아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과학기술을 아는 젊은 변호사가 많이 배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매경ECONOMY

영국 방송업체, 중국내 불법모방 프로그램 저작권 받아내



영국의 한 방송프로그램 배급업체가 중국 방송국과의 저작권료 청구소송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동안 중국내 불법 모방 프로그램의 범람에 골머리를 앓아온 해외 방송사들의 저작권 주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국영 쉐젠(Shenzhen) 케이블TV에 대해 최소 20만달러의 프로그램 저작권료를 영국의 ECM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셴젠 케이블TV는 지난 1998년 ECM으로부터 인기 TV쇼 ‘행운의 숫자’ (Lucky Number)의 포맷을 사들여 ‘고 빙고’ (Go Bingo)라는 이름으로 제작하고 있으나, 그동안 사용료 지급을 거부해 ECM과 마찰을 빚어왔다.

ECM의 빌 윌슨 CEO는 ‘판결에 따라 당시의 계약금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법원의 은행계좌로 입금됐다’며 ‘이제 우리가 이를 수행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셴젠 케이블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무단도용을 당연시 하던 중국 방송업계의 관례에 제동을 걸었다’며 ‘중국 방송업체들에 대한 해외 방송사들이 저작권 지급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방송업계는 지난 1995년부터 서방국가들의 프로그램 포맷을 도입해 왔지만, 저작권 계약을 맺지 않은 무단사용이 상당수를 차지해 왔다.

현재 상하이 오리엔탈 TV가 인기리에 방송하고 있는 퀴즈쇼 ‘행운의 테스트’ (Fortune Test)는 영국 BBC 방송의 프로그램 ‘가장 약한 고리’ (The Weakest Link)와 거의 동일하다.

퀴즈 우승자에게 거액의 상금을 제공하는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도 여러 모방 프로그램에 시달리고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중국 상표등록 건수 2년째 세계 1위





중국의 상표등록 건수가 2년연속 세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지적재산소(SIPO)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신규 등록된 상표는 모두 27만건으로 전년에 이어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중국에서 등록된 상

표는 모두 145만개로 미국과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중국 국가지적재산소가 관련 규정 및 감독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불법 상표 등록행위도 3만8천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중앙일보

일본, SW 특허·상표권 대폭 강화



일본이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대폭 강화한 특허법·상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의 특허권 인정범위를 확대 특허보유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으로 소프트웨어를 무단 배포하면 특허침해행위로 간주키로 했다.

현행 특허법은 물건·방법의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와 같은 기억매체에 들어있는 경우만 물건의 일부로 인정해 보호했지만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해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유포될 경우 특허권 보호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물건의 범위에 프로그램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또 특정 사람이나 기업의 홈페이지도 상표권 보호대상에 포함키로 해 홈페이지를 보고 베끼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이 신문은 “특허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은 40년만에 처음”이라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IT)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IT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특허권을 출원할 때는 이미 있는 다른 관련 기술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특허심사 업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선행기술 조사 과정을 없애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출처 중앙일보

대만, '특허大國' 도전장



대만 산업계에 특허열풍이 불고있다.

중국으로의 산업설비 이전 가속화로 산업공동화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경제의 돌파구로 기술혁신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제조기지로서 로열티로 매출을 올리는 첨단기술 기지로의 변신이다.

대만은 과거 다른 회사의 디자인을 베껴서 싼 값에 파는 “모방회사”들의 전초기지로 통했다. 그러나 대만 기업들이 세계적인 설계 및 제조업체로 성장하면서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이는 연구개발 붐으로 이어졌다.

이 결과 대만은 지난 2000년에 미국 특허권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획득한 국가에 랭크됐다. 미국 일본 독일에 이은 것이다. 10여년 전만해도 대만은 미국 특허권 획득 국가 순위에서 11위에 머물렀다.

대만의 특허열풍은 기업들에게 혁신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동시에 경쟁사와의 특허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과거 대만 기업의 경영진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비용을 들이는 것을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외국기업들의 무차별적인 특허공세에 무방비로 놓여있었던 것. 대만 기업들은 특허 침해소송

을 당하고 많은 돈을 들여 분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왜 특허가 필요한지를 절감하게됐다.

전자부품업체인 혼하이정밀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회사의 미국 특허권은 95년만해도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5년 뒤에는 4백건으로 늘었다. 10여년간 미국의 경쟁사인 AMP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하기만 해온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AMP를 인수한 타이코인터내셔널의 대만 자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만 법원에 냈다.

특허열풍은 반도체설계회사인 비아테크놀로지처럼 생산은 하지않고 기술개발로수입을 올리는 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비아테크가 지난 99년 처음으로 인텔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거라곤 인텔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인텔이 새로운 특허소송을 제기했을 때 비아테크는 인텔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낼 수 있었다. 미국 특허를 54건이나 확보한 덕분에 가능했다.

분쟁이 어떻게 타결될지 알 수 없지만 비아테크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된 것은 분명하다고 법률전문가들은 말한다.

출처 한국경제

일본 특허청의 전자서비스



일본 특허청은 온라인 서비스의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목적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이라도 용이하게 특허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첨단 기술에 의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는 일본기업에 있어 특허 특허의 활용은 생명선이다. 세계 최초로 특허 및 실용신

안의 전자출원을 접수하기 시작해, 중앙성청가운데서 온라인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한 특허청은 보다 간편하면서 사용하기 쉬운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올 3월에는 미국의 특허명세서와 유럽특허 공보의 요약이 인터넷 상에서 일본어로 서비스된다.



이는 특허청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허 전자 도서관”의 새로운 메뉴이다. 개설 당초부터 구미의 특허 공보가 그대로 게재되고 있지만, 일본어로도 읽을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역으로 특허청은 해외에서 일본의 특허를 조사하고 싶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동 번역 기능도 강화한다. 3월부터 일본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공보는 특허번호 등으로 용이하게 검색되며, 영문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허 전자도서관은 1999년 3월에 문을 열었다. 등록 완료, 출원중인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 가능하다. 메이지시대 이후 공보 약 4700만 건이 수록되어 있고, 특허 전문가가 재빨리 검색할 수 있도록 국제특허 분류와 특허청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검색 기호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전문가용의 검색 기호는 “CC02” 등으로 되어 있어,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2000년 3월 전자도서관의 데이터를 “휴대전화”와 “전자결재” 등과 같은 일반적인 키워드로 조사할 수 있는 초심자용 검색기능이 추가되어 사용이 쉬워진다.

99년 이후 잘 팔리는 아이디어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 특허”로서 인정된 것도 있어, 전문가 이외에서도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기획 및 전략부문의 담당자, 중소기업, 개인들이 특허를 조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전자도서관에서 초심자가 검색을 하는 비율이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특허청의 서비스 개량작업은 환영을 받고 있다. 전자도서관 서비스가 시작되기 이전, 특허정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민간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특허청 내의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방대한 종이의 문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이용자는 월간 수 천 명에 이른다. “특허 원격지의 이용자에게는 부

담이 됐다”고 특허정보이용추진실은 밝혔다. 이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검색이용은 월간 100만 건이나 됐으며, 최근에는 월 200만 건을 넘어섰다.

특허 출원 접수는 인텔리전트 빌딩인 현 청사가 완성된 직후인 90년에 전자화되어, 2000년 말에는 종이에 의한 출원은 불과 3%로 줄어들었다. 의장, 상표, 국제특허의 출원도 2000년 1월부터 온라인화되어, 현재는 출원과 그 후의 수속을 합한 건수가 연간 200만 건에 달한다. “최근 다른 성적이 전자정부를 말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특허청은 10년을 앞섰다”고 심의업무부의 나가타 정보시스템 과장은 말했다.

전자출원에는 특허청이 CD-ROM을 이용한 읽기 전용 메모리로 무상배포하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당초에는 고가인 전용 단말기가 필요했지만 98년부터는 범용 PC가 사용됐다. 특허 사무소와 기업, 개인 등은 소프트웨어의 서식에 따라 출원내용을 기입, ISDN(종합디지털 통신망)을 매개로 해서 특허청의 전용 서버에 송신한다.

전용 소프트웨어와 ISDN을 사용하는 것은 출원 데이터의 시큐리티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시큐리티 기술이 향상됐기 때문에, 인터넷으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출원된 기술은 3년 이내의 청구를 거쳐, 특허청의 심사를 받는다. 특허 등록 여부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평균 2년 반이 걸리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원해서 1년반이 지난 안건은 공개된다. 이러한 출원, 심사, 정보공개의 흐름이 현재는 모두 전자화되고 있다.

원래 특허청의 서류없애기(paperless) 노력은 매년 60만 건이 새롭게 출원되는 방대한 공업소유권의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특허청의 전자서비스는 벌써 민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인프라가 되고 있다.

(해외과학기술동향)